

[사 건 명] 행심 2017 - 71

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출석정지 3일 등』 처분 취소 청구

□ 청구인 : ■■■■

□ 피청구인 : ○○중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7. 11. 17.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출석정지 3일 등』 처분을 취소한다.

[재결이유]

I. 사건개요

가. 2017. 10. 23. 오후4시경 ◇◇◇, △△△, □□□, ■■■, ●●● 및 이 사건 청구인이 관교놀이터 인근 빌라 지하에 가게 되었고 ●●●과 ■■■ 둘이 이야기하는 도중 청구인은 친구 ●●●이 ■■■에게 맞는 것을 목격하고 이전 사건이 생각 나 ■■■의 뺨을 두 대 때렸고 ■■■에게 사과 후 기분 나쁘면 ■■■도 때리라고 하여 ■■■도 청구인을 1대 때렸다.

나. 이후 ■■■은 2017. 11. 02.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하였으며, 이와 함께 이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재 인천 ▲▲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, 2017. 11. 17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

회에서 청구인은 『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, 출석정지 3일,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』 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 이라고 함)을 받았으며,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. 11. 22. 본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.

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

쌍방폭행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최초 원인 제공은 ■■■■에게 있으며, 환김에 먼저 때렸지만 즉시 사과 후 청구인도 맞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.

III. 피청구인 주장

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. 청구인은 ○○○ 학생이 ■■■ 학생으로부터 맞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, ■■■ 학생이 1대를 때린 것은 ■■■ 학생의 선 폭행 후 ■■■ 학생의 권유로 발생한 것이다.

나.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(학교폭력의 유형)에서 ‘욕설 또는 손발로 때리거나 그로 인해 상처를 입힌 행위’는 신체폭력 중 ‘폭행, 상해’로 정의되어 있다. 때린 행위가 명확하며 그 행위가 다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집단폭행이라고 판단된다.

다. 최초 원인제공이 ■■■ 학생에게 있다는 청구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.

IV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1. 관계법령

가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7조

나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

2. 판 단

가. 인정되는 기초 사실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(제출된 증거 포함),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(청구인측은 심리 당일 불출석함)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.

(1) 이 사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학생인 ㉸㉸㉸에게 위 I. 가.항과 같이 신체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(2) 다만, 청구인은 ○○○을 때리는 피해학생을 보고 예전 생각이 나서 피해학생의 뺨을 때렸고, 이후 자신을 때리라고 하자 피해학생도 청구인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외에도 다른 여러 학생들이 피해학생 1명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청구인 및 상대 가해학생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,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에게 신체적 물리력을 가할 의사로 피해학생이 그런 행동을 했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.

(3) 또한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가해학생들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,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이 송치된 상태이다.

나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

(1) 청구인은 원인 제공은 피해학생이 한 것이고, 쌍방이 한 대씩 주고받고 사과하고 끝낸 일에도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청구인과 피해학생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1명의 피해학생이 방과후 다수의 가해학생이 있는 곳으로 불려가서 그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가해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행동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가할 의도로 행한 행동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, 폭행의 원인 제공을 누가했는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행사는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.

(2)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요소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, 이 사건의 경위, 가해행위, 피해정도,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관계,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결코 이 사건 처분이 중하여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.

V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 끝.